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00. 00. 00. 공포, 2000.00.0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계획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감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교통안전팀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정평가법」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04.07.공포, 2020.07.08.시행)으로 조문 내 일부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 제20호부터”를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지역정책과·하천계획과”를 “지역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3호 중 “항공·하천·단지조성”을 “항공·단지조성”으로 한다.
제7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0항제8호 중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 및 건설안전국”을 “지역협력국·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부분 “관리국”을 “지역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리국장”을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리국장”을 “지역협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국에 운영지원과·건설지원과”를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지역협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을 “시설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설지원과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

5호로 하고, 같은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9조 제목 부분 “도로시설국”을 “도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로시설국장”을 “도로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로시설국장”을 “도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를”을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도로공사과 및 민자도로과를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해상교량안전과를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1과 및 도로공사2과를”을 “도로공사과·민자도로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1과·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사무관으로”를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12. 소관 간척공사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제19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제19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제1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교통안전 기본·시행계획의 조정·협의 및 권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조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 안전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설주사로, 하천 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시설주사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을 “도로유지보수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을 “도로유지보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 구역란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하고,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의 관할구역을 “강원도 일원”으로 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로 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일원”으로 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원(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국토관리사무소 시설별 관할 구역에서 국가하천란을 삭제한다.
별표 7 총계 중 “1,008”를 “993”로 하고, 일반직 계 “998”을 “98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0”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6”을 “24”로 하며, 행정사무관 “88”을 “8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하며, 시설사무관 “62”를 “57”로 하고, 시설주사 “61”을 “59”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을 삭제하고,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9”를 “8”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중 “1,011”를 “9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1”을 “98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2”를 “6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6”을 “24”로 하며, 행정사무관 “90”을 “89”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1”로 하며, 시설사무관 “63”을 “58”로 하고, 시설주사 “60”을 “58”로 하고,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9”를 “8”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9”를 “8”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9 총계 중 “1,495”를 “1,342”로 하고, 일반직 계 “1,495”를 “1,34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을 “1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7”을 “30”으로 하고, 시설사무관 “32”을 “23”으로 하며, 행정주사 “44”를 “38”로 하며, 시설주사 “190”을 “146”로 하고, 행정주사보 “68”을 “65”로 하며, 공업주사보 “30”을 “28”로 하고, 시설주사보 “249”를 “215”로 하며, 행정서기 “71”을 “61”로 하고, 공업서기 “2”를 “1”로 하며, 시설서기 “98”을 “7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43”을 “37”로 하며, 시설서기보 “32”을 “3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13”을 “12”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의2 총계 중 “1,495”를 “1,342”로 하고, 일반직 계 “1,495”를 “1,34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을 “1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7”을 “30”으로 하고, 시설사무관 “32”을 “23”으로 하며, 행정주사 “41”을 “35”로 하며, 시설주사 “183”을 “139”로 하고, 행정주사보 “68”을 “65”로 하며, 공업주사보 “30”을 “28”로 하고, 시설주사보 “244”를 “210”으로 하며, 행정서기 “71”을 “61”로 하고, 공업서기 “2”를 “1”로 하며, 시설서기 “98”을 “7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43”을 “37”로 하며, 시설서기보 “32”을 “3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13”을 “12”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19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하 안전 관리 (지방국토관리청)	19명 (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2)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방국토관리청)	36명 (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3)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31명 (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4)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5)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교통안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교통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로공사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1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4항·제5항, 제26조,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제6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

항, 제4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중 “국토해양부”를 “환경부”로 한다.

별표 5의3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2항·제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0조제5호·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민간자격 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토도시시설) ① ~ ② (생략)	제7조(국토도시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도시시설에 국토정책과·수도권정책과·지역정책과·하천계획과·산업입지정책과·복합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녹색도시과·스마트도시팀·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건축문화경관과 및 건축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	⑥ -----지역정책과----- ----- ----- ----- ----- ----- ----- ----- ----- ----- -----.

로 보한다.

⑦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남북 육상·항공·하천·단
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 ~ 18. (생 략)

⑧·⑨ (생 략)

⑩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
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
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하도준설은 제
외한다)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
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항공·단지
조성 -----

14. ~ 18.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
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13.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의 보상에 관한 사항

14.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7.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
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8.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사항

19. 남북간 하천 협력 업무에 관
한 사항

20. 대규모제방 계획의 수립

21.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
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2.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23. 하천관리원·하천보수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 ⑫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⑫ (생략)

⑫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감독

9. ~ 13. (생략)

⑬ ~ ⑮ (생략)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생략)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제18조(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⑫ -----

1. ~ 7. (현행과 같음)

8.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

9. ~ 13. (현행과 같음)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역협력국·도로관리국 및 건설안전국 -----

제18조(지역협력국)

① 지역협력국장 -----
----- 지역협력국장 -----

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건설지원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⑤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설시계획의 승인·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지역협력과 -----

③ -----
----- 시설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협력과장은 -----

1.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3. 국가산업단지설시계획의 승인·준공인가 및 관리

4.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5.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6.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분석

7.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8.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9.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징수·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⑥ (생략)

제19조(도로시설국)

① 도로시설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민자도로관리과를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해상교량안전과를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 및 관리
11.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2.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3. 세입·채권의 관리
14. 공무원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징수·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5.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도로관리국)

① 도로관리국장-----

----- 도로관리국장-----
-----.

② 도로관리국에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교통안전팀을-----
-----도로공사과·민자도로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해상교량안전과 및 교통안전팀을 두며, 부산지방국

계획과·도로공사1과 및 도로공사2과를 둔다.

③ 도로계획과장·도로공사과장·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 제외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1과·도로공사2과 및 교통안전팀을 ----.

③ 도로계획과장·도로공사과장·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교통안전팀장은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12. 소관 간척공사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장만 해당한다.

1. ~ 9. (생략)

<신설>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⑦·⑧ (생략)

<신설>

⑤ -----

-----.

1. ~ 9. (현행과 같음)

10.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소관 국가산업단지지원 도로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교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교통안전 기본·시행계획의 조정·협의 및 권역별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조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제2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 및 하천공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 및 하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수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법」 제50조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통 안전기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도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9.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10.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1.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도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①·② (생략)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다만, 수원국토관리사무소·논산국토관리사무소·홍천국토관리사무소·광주국토관리사무소·남원국토관리사무소·진영국토관리사무소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는 운영지원과·도로안전운영과·시설안전관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도로안전운영과 및 시설안전관리과를 둔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시설안전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보한다.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도로유지보수용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8</u>	<u>993</u>	-15
·	·	·	
·	·	·	
일반직 계	<u>998</u>	<u>983</u>	-15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0</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6</u>	<u>24</u>	-2
·	·	·	
·	·	·	
행정사무관	<u>88</u>	<u>87</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u>	<u>1</u>	-1
·	·	·	

·	·	·	
시설사무관	<u>62</u>	<u>57</u>	-5
·	·	·	
·	·	·	
시설주사	<u>61</u>	<u>59</u>	-2
·	·	·	
·	·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u>1</u>	<u>0</u>	-1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9</u>	<u>8</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3</u>	<u>2</u>	-1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1</u>	<u>996</u>	-15
·	·	·	
·	·	·	
일반직 계	<u>1,001</u>	<u>986</u>	-15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2</u>	<u>61</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6</u>	<u>24</u>	-2
·	·	·	
·	·	·	
행정사무관	<u>90</u>	<u>89</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u>	<u>1</u>	-1
·	·	·	

·	·	·	
시설사무관	<u>63</u>	<u>58</u>	-5
·	·	·	
·	·	·	
시설주사	<u>60</u>	<u>58</u>	-2
·	·	·	
·	·	·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9</u>	<u>8</u>	-1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9</u>	<u>8</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3</u>	<u>2</u>	-1
·	·	·	
·	·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5</u>	<u>1,342</u>	-153
일반직 계	<u>1,495</u>	<u>1,342</u>	-153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3</u>	<u>19</u>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5</u>	<u>4</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7</u>	<u>30</u>	-7
·	·	·	
시설사무관	<u>32</u>	<u>23</u>	-9
행정주사	<u>44</u>	<u>38</u>	-6
·	·	·	
·	·	·	
시설주사	<u>190</u>	<u>146</u>	-44
·	·	·	
·	·	·	
행정주사보	<u>68</u>	<u>65</u>	-3
공업주사보	<u>30</u>	<u>28</u>	-2
·	·	·	

시설주사보	<u>249</u>	<u>215</u>	-34
·	·	·	
·	·	·	
행정서기	<u>71</u>	<u>61</u>	-10
공업서기	<u>2</u>	<u>1</u>	-1
시설서기	<u>98</u>	<u>76</u>	-22
·	·	·	
·	·	·	
행정서기보	<u>43</u>	<u>37</u>	-6
·	·	·	
시설서기보	<u>32</u>	<u>30</u>	-2
·	·	·	
·	·	·	
공업서기보	<u>13</u>	<u>12</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1</u>	<u>0</u>	-1
·	·	·	
·	·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5</u>	<u>1,342</u>	-153
일반직 계	<u>1,495</u>	<u>1,342</u>	-153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3</u>	<u>19</u>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5</u>	<u>4</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7</u>	<u>30</u>	-7
·	·	·	
시설사무관	<u>32</u>	<u>23</u>	-9
행정주사	<u>41</u>	<u>35</u>	-6
·	·	·	
·	·	·	
시설주사	<u>183</u>	<u>139</u>	-44
·	·	·	
·	·	·	
행정주사보	<u>68</u>	<u>65</u>	-3
공업주사보	<u>30</u>	<u>28</u>	-2
·	·	·	

시설주사보	<u>244</u>	<u>210</u>	-34
·	·	·	
·	·	·	
행정서기	<u>71</u>	<u>61</u>	-10
공업서기	<u>2</u>	<u>1</u>	-1
시설서기	<u>98</u>	<u>76</u>	-22
·	·	·	
·	·	·	
행정서기보	<u>43</u>	<u>37</u>	-6
·	·	·	
시설서기보	<u>32</u>	<u>30</u>	-2
·	·	·	
·	·	·	
공업서기보	<u>13</u>	<u>12</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1</u>	<u>0</u>	-1
·	·	·	
·	·	·	